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금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50

발의연월일: 2025. 2. 13.

발 의 자:문금주・이병진・박용갑

정진욱 • 박지원 • 김문수

서미화 · 박해철 · 이재관

권향엽 · 안도걸 · 장종태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, 「대한민국헌법」 제6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 일이 있었음.

그러나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어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내란 및 외환의 죄 또는 국정농단의 혐의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이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 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2(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정지) 공무원이 「형법」 제2편제1장(내란의 죄) 및 제2장(외환의 죄)에 규정된 죄 또는 국정농단(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자가 정부의 주요 정책결 정 및 사업에 개입하는 등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)의 혐의로 「헌법재판소법」 제50조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그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한다. 다만, 다만, 감액된 보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소급하여 지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수 감액에 관한 적용례)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49조의2(권한 행사가 정지된
	공무원의 보수 지급 정지) 공
	무원이 「형법」 제2편제1장
	(내란의 죄) 및 제2장(외환의
	죄)에 규정된 죄 또는 국정농
	단(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
	자가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및
	사업에 개입하는 등 영향을 행
	사하는 경우를 말한다)의 혐의
	로 「헌법재판소법」 제50조에
	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
	그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한
	다. 다만, 다만, 감액된 보수는
	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기
	각 결정이 있는 경우 소급하여
	<u>지급한다.</u>